#### 진로탐색활동 학점제 내규

(최종 개정일 2022.12.1.)

- 제1조(목적) 이 내규는 명지대학교 학칙 제33조, 학칙시행규칙(학사과정) 제77조에 의거 학생의 다양한 진로 탐색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진로탐색활동 학점제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학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용어의 정의) '진로탐색활동 학점제'(이하 '진로학점제'라 한다)라 함은 학생이 자율적으로 한 학기 동안 수행할 특정한 진로탐색 과제를 선정하고, 그 과제를 설계하고 수행하게 함으로써 학점을 인정하는 제도를 말하며, 교과목 표시는 '진로탐색 및 설계'로 한다.
- 제3조(주관부서 및 역할) ①진로학점제 사무 주관부서는 인문 및 자연 캠퍼스 취창업지원처 진로취업지원팀으로 정한다.(변경 2022.3.1.)
  - ②주관부서는 진로학점제 이수 조건을 충족한 학생들에 대하여 소속 단과대학교학팀 및 교육지원처 학사지원팀으로 학점 인정을 요청한다
  - ③단과대학 교학팀 및 교육지원처 학사지원팀은 학점인정 처리 결과를 주관부서로 통보 한다.
- **제4조(진로탐색 과제 영역)** 진로탐색활동에 해당되는 과제 영역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.(조명 및 내용변경 2022.12.1)
  - 1.타 전공과의 융합·창의적 내용 또는 신기술·산업분야 탐색 등 기존 교육과정(전공, 교양)에서 제공하지 않는 분야의 진로탐색(신설 2022.12.1)
  - 2.발전가능성이 있는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한 창업 프로젝트(신설 2022.12.1)
  - 3.문화예술 분야의 공연, 전시, 영상 제작 등 창작 프로젝트(신설 2022.12.1)
  - 4.사회문제에 대한 분석 및 해결책을 도모하는 사회 기여 프로젝트(신설 2022.12.1)
  - 5.전공심화과제 등 연구 주제에 따른 연구 수행, 실험 또는 발표 활동(신설 2022.12.1)
  - 6.산학 프로젝트 또는 지역 타 대학 및 기관과의 연합 프로젝트(신설 2022.12.1)
  - 7.기타 진로탐색 활동으로 성과를 증빙 할 수 있는 프로젝트(신설 2022.12.1)
- **제5조(신청자격 제한 및 이수자격 부여)** 진로학점제 신청자격은 수행학기 기준 7학기 이하 재학생으로 한하며, 승인된 학생에 한하여 이수자격을 부여한다.
- 제6조(진로학점제 운영절차) 진로학점제는 다음의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.
  - 1.진로학점제는 정규 학사일정을 따르며 학기 단위로 수행학기를 운영한다.(변경 2022.12.1.)
  - 2.진로학점제는 수행학기 기준 개강 최소 30일 이전에 시행을 공고하고 참가자를 모집한다. (변경 2022.12.1.)
  - 3.진로학점제 신청자는 지도교수와 협의하여 탐색과제를 선정하고 수행계획을 수립한다.(변 경 2022.12.1.)

- 4.학과 주임교수는 괴제수행계획서에 대하여 과제타당성, 실행성, 자기주도성을 검토하고 날 인한다.(변경 2022.12.1.)
- 5.진로학점제 신청자는 과제 수행계획서를 주관부서에 제출하고, 진로학점인정심의위원회 위원 3인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는 서류평가 및 면접을 통해서 개강 전까지 신청자의 이수자격 승인여부를 결정한다.(변경 2022.12.1.)
- 6.진로학점제 참여학생은 정규학기 기간 최소 3개월에 걸쳐 과제를 수행하고, 종료 후 수행 보고서 및 증빙자료를 주관부서에 제출한다.(변경 2022.12.1.)
- 7.주관부서는 수행학기 말 진로학점인정심의위원회를 소집하며, 위원회는 참여학생의 과제수행 평가에 따라 학점 인정 여부를 확정한다.(신설 2022.12.1.)
- **제7조(지도교수 역할) (변경 2022.12.1.)** ①학생은 전임교원 중 1인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.(변경 2022.12.1.)
  - ②지도교수는 승인된 수행계획서에 따라 진로탐색활동이 적절하게 실행되고 있는지 등을 월 1회 이상 지도 점검하여야 한다.(별표 6)
  - ③지도교수는 수행보고서가 계획서 대비 성과 실행 정도의 적절성을 판단하여 '적격' 또는 '부적격'으로 표기하여 주관부서에 제출한다.(별표 4)
  - ④(삭제 2022.12.1.)
  - ⑤지도교수에게 일정한 학생지도비를 지급할 수 있다.(변경 2022.12.1.)
- 제8조(서류제출) 진로학점제를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은 다음의 서류를 제출한다.
  - 1.진로탐색활동 지원서 1부(별표 1)
  - 2.진로탐색활동 과제 수행계획서 1부(별표 2)
  - 3.진로탐색활동 과제 수행보고서 1부(별표 3)
- 제9조(진로학점인정심의위원회) ①진로학점제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'진로학점 인정심의위원회'(이하'위원회')를 둔다.
  - ②위원회 구성은 취창업지원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, 교육지원처장, 학생처장을 당연직 위원으로, 단과대학장, 학생상담센터장, 현장실습지원센터장, 인문·자연 창업교육센터장으로 총장이 위촉하는 6인 이내의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,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. (변경 2022.3.1., 2022.12.1.)
  - ③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, 의결한다.
  - 1. 진로학점제 정책 수립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
  - 2. 수행보고서의 학습성과 평가 및 학점 인정의 적합성 평가
  - 3. 학점 이수 인정 여부
  - 4. 기타 진로탐색활동 인정에 관한 사항
  - ④위원회의 사무는 취창업지원처 인문캠퍼스 취창업지원팀이 주관한다.
- 제10조(이수자격 포기) 이수자격이 승인된 학생 중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 중도 포기할 수 있다.(별표 7)

- 제11조(학점인정 및 이수과목 표시) ①진로학점인정심의위원회에서 '적격'판정을 받은 참여학생에 한하여 전공 또는 교양으로 2학점 인정하며, 교과목 표시는 '진로탐색 및 설계'로 한다.(변경 2022.12.1.)
  - ②진로탐색활동 학점은 수강신청 기준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.
  - ③다전공(부전공, 복수전공, 연계전공)의 전공학점은 다전공 소속 학부(과)에서 요구하는 교과 목 중 다전공 학부(과)에서 인정하는 기준에 따른다.
  - ④진로학점제의 학점이수는 재학기간중 최대 3회(학기당 2학점) 가능하다. 다만, 진로학점인 정심의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우수 참여학생의 경우에만 2회 이상 이수할 수 있다.(변경 2022.12.1.)
- 제12조(진로학점제 성적평가) 진로학점제의 평가는 P(Pass) 또는 N(Non-Pass)로 표시한다.
- 제13조(시상 및 장학금) 진로학점제 당해 학기 이수자 중 성과우수자에 대하여 시상 및 장학금 을 지급할 수 있다
- 제14조(준용) 이 내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학칙 및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.

부 칙

이 내규는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내규는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내규는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## 진로탐색활동 학점제 지원서

	., .		73 -3 ( ) ->			
지원자	성명 		학과(전공)			
	학번		학년/학기	I		
	학업성적	■ 직전학기취득학점:	학점 ■직전학기평	균평점: 점		
	휴대전화		E-mail			
과?	세명					
진로탐색 활동 과제목표						
지도교수 의견			학과(부) 성명 :	(서명)		
학점인	정신청	□ 전공 2학점 □ 일반교양 2학점 □ 학점 신청하지 않음				
학과 주	-임교수		학과(부) 성명 :	(서명)		
개인 제공동	-	■ 진로탐색활동 프로그램 참여 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■본 정보는 진로탐색활동 학 ■위 사항에 동의할 경우 서명 20	하는데 동의합니다. 점제 DB구축을 위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.			
제반 규	정을 준수	로탐색활동 학점제 프로그락 하겠습니다. 또한, 프로그램 Non-Pass)처리 될 수 있음을	참여 후 진로학점인	민정심의위원회 심의 결과,		
		20 년	월 일 신청자 :	(서명)		
			취장업	지원처장 귀중		

첨부 : 진로탐색활동 과제 수행계획서 1부.

#### 진로탐색활동 학점제 과제 수행계획서

과제명	
진로탐색활동 과제목표	
진로탐색활동 실행계획 (구체적으로)	자기주도적 진로탐색과정 / 지도교수면담 또는 컨설턴트(MJ대학일자리센터) 상담계획 / 주차별 실행계획 / 견학, 실습 또는 대회 참가계획 등을 작성 (페이지 제한없음)

20 . . . .

작성자 : 학부(과) 성명 : (서명)

## 진로탐색활동 학점제 과제 수행보고서

성명				학과(전급	중)		
학번				학년/학	7]	1	
과제명							
지도교수의 과제수행 평가	평가	의견					
	지도	교수 :		학과(부)	성명	:	(서명)
상기 본인은 진로탐색활동 프로그램 수행보고서를 제출합니다. 20							
				제	출인 :		(서명)
- 과제 수행 세부활동 보고서(자유형식) 별첨 첨부. • 세부활동 내용 및 실적 증빙 자료 포함 • 지도교수 지도의견 포함							
학점인정			공 2학점 점 신청하지 Q	<u> </u>		일반교양 2학점	
학과 주임교수				학과(부)	<u>ح</u>	 ]명 :	(서명)

## 진로탐색활동 수행보고서 평가표

학생 이름	학번		지도 교수	(인)
과 제 명				
세부항목		평가역량 지표	판정 (항목별 20점 만점)	
과제충실성	과제 참여 진정성	셔도, 지속성, 책임감,		점
과제적합성	전공/장리 주제적합	]희망과의 연계성, 성	점	
자기주도성	과제목표 도전정신	도달, 능동적인 자세.	점	
진로설계능력		/탐색능력, /장래희망의 구체성	점	
문제해결능력	정보 이히 리더십, <sup>2</sup>	H/수집/평가 능력, 갈등해결	점	
	총점			점
	종합 판정			적격 / 부적격

<sup>※</sup> 총점은 100점 만점이며, 60점 미만은 '부적격'

<sup>※</sup> 항목별 점수중 10점 미만이 있을 경우 '부적격'

# 진로탐색활동 수행보고서 사정표

			평가』	a.소별 기 (항목별		평가		지도교수	위원회	
연 번	학생성명 (학번)	과제 충실 성	과제 적합 성	(양독일 자기 주도 성	전로 설계 능력	문제 해결 능력	총점 (100점)	중합평가 (적격/부적격)	지도 교수명	최종사정 (적격/부적격)
1										
2										
3										
4										
5										
6										
7										
8										
9										
10										

위 사항을 심의 • 의결합니다.

20 년 월 일

진로학점인정심의위원회 위원장 : (인)

## 학생 면담기록부

#### ■ 학생정보

성명	학고(전공) 학년/학기	학번	
과 제 명			

#### ■ 면담사항

구분	내 <del>용</del>	비고
면담내용		
특이사항		

면담일 : 20 년 월 일

지도교수 : (인)

(별표 7) (학생용)

#### 이수자격 포기 신청서

지도	(서명)
교수	(^ 3)

■ 학과(전공):■ 학 번:■ 성 명:■ 연 락 처:

학년도	학기	수행과제명	신청학점

본인은 상기의 진로탐색활동 학점제 이수 자격을 포기합니다.

20 년 월 일

신 청 자 : (인)

취창업지원처장 귀중